

2016.03.24

「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」 개정 입안계획서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개정이유

- 「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대한 고시」의 시행 시기가 4세대 환급시스템 개통시기와 겹쳐 업체의 시스템 및 연계 프로그램 변경, 4세대 시스템 안정화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기하게 되었습니다.
- **시행일자 : 2016. 07. 01 (금)**

2. 주요 개정내용

- 시행시기를 2016. 4. 1.에서 2016. 7. 1.로 변경(부칙 제1조)

3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
- 담당자 : 유명재 사무관(☎ 042-481-7875)
서태진 주무관(☎ 042-481-7877)
- 제출기한 : 2016. 03. 25
- 제출방법 : - E-mail (famous@customs.go.kr, bigmind@customs.go.kr)
- 우편(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)
- FAX(042-481-7879)